

VII. 시정권고

중재위원회는 언론의 보도내용에 의한 국가적 법익이나 사회적 법익 또는 타인의 법익 침해사항을 심의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언론사에 서면으로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시정권고는 피해자가 아닌 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중재위원회는 6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시정권고는 언론사에 대하여 권고적 효력을 가지는 데에 그치며, 각 언론사별로 시정권고한 내용을 외부에 공표할 수 있다. 시정권고에 불복하는 언론사는 시정권고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중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으며 중재위원회는 재심청구가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정권고를 취소하여야 한다.

VIII. 언론중재법 제정에 대한 평가

1. 언론피해구제에 대한 관련 법률의 단일화

현행 민법과 정간물법, 방송법 등에 분산되어 왔던 언론피해 관련 규정이 언론중재법으로 통합됨으로써 구제 제도에 대한 피해자들의 접근이 용이해졌으며 피해 구제 제도에 대한 이용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조정과 중재 절차의 분리

현행 중재절차는 조정에 가까워 중재와 혼동이 있었으나 언론중재법에서는 본래의 의미인 중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조정과 중재의 구분을 명확히 했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절차에 대한 선택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게 됐으며 피해구제 제도에 대한 실효성이 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손해배상청구도 조정·중재대상화하여 시간과 비용 절감

정간물법상 중재위원회는 반론보도청구와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만 중재를 하도록 했으나 새로 제정된 언론중재법에는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의 조정, 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언론분쟁을 종합적으로 조정, 중재함으로써 언론피해를 현실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피해자는 물론 언론사 역시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사법적 소송에 따른 과중한 부담을 덜게 됨으로써 분쟁을 조속하고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